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보 건 복 지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사 보안·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을 증원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입법예고(2022. 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4명, 경위 1명)”을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으로 하고, 제41조제4항제1호 중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별표 4 중 총계 “858”을 “863”로 하고, 일반직 계 “849”를 “854”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8”을 “823”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19”를 “3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9”를 “3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5”를 “316”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1. 제4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4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1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5급 이하	4

3. 제4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9월 1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연구관 이하	2

4. 제45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7월 6일)

총계	5
일반직 계	5
6급 이하	5

5. 제45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2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③ (생 략)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4명, 경위 1명)</u>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u>고용노동부</u>, 2명(6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생 략) <u>제45조(한시정원) ①</u> (생 략)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u>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u>고용노동부</u>, 1명(5급 1명)은 <u>국가인권위원회</u>, 2명(6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현행과 같음) <u>제45조(한시정원) ①</u>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⑤ (생략)

<신설>

<삭제>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58</u>	<u>863</u>	+5
·	·	·	
·	·	·	
일반직 계	<u>849</u>	<u>854</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18</u>	<u>823</u>	+5
·	·	·	
·	·	·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19</u>	<u>320</u>	+1
일반직 계	<u>319</u>	<u>320</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5</u>	<u>316</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3